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8월 23일, 최보윤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2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24.11.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5.8.20.)

상정, 축조심사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6.2.27.)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6.3.13.)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최보윤 의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장애인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국

제적 흐름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 간 연계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에 부합하는 권리 중심의 새로운 장애인 정책 지향점을 제시하고, 여타 장애인 관련 법령과 조문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기본법으로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자 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장애인 학대를 장애인 권리침해 전반으로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장애포괄적 접근 및 장애주류화 조치의 개념과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최보운 의원)

가. 장애인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장애 특성에 따른 지원을 통하여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장애’의 정의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반영하여 “사회적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

신적 특성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하여 이른바 사회적 장애 개념을 도입하고, ‘장애포괄적 접근’의 정의를 새롭게 도입함 (안 제3조).

다. 법령, 예산 및 기금 사업 등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장애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함(안 제8조).

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이념을 반영하여 모든 영역에서의 장애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자립생활 보장, 접근성, 참여, 건강, 교육, 직업, 소득보장 등 장애인 정책에 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36조까지).

마.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주요정책을 수립, 심의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정책위원회를 둠(안 제45조).

바.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함 (안 제53조).

사. 장애인의 학대 및 권리침해 행위 금지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안 제54조부터 제75조까지).

자.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 권한위임 등에 관한 보칙 규정을 둠(안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연광석)

제정안은 현재 장애인복지 관련 기본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을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여 이들에 대한 복지지원을 장애인으로서 가지는 권리가 아닌 동정·시혜의 관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우리 국회에서 2008년 12월 비준하고, 2009년 1월부터 발효되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권리 중심의 새로운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자,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새로운 장애인 정책 지향점을 제시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 복지 지원 및 서비스 제공 절차 등을 총괄하는 「장애인복지법」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 개념의 확대, 장애인의 권리 명시, 장애인정책 추진체계 개편, 장애영향평가 제도 도입, 장애인 권리침해 방지와 권리옹호 및 확대 관련 사항 등을 새롭게 규정하여 실효성 있는 장애인정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려는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

다만, 다음과 사항 등에 관해서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첫째, 제정안은 장애를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일상생활 또는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는바, 장애인에 대한 복지 증진의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장

애인의 권리침해와 학대 관련 범죄 등에 대한 적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의무 신고대상 및 취업제한, 벌칙 적용 등의 조항에서 명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제정안에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민의 책무까지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내 시설물 건립 등을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되므로, 무조건적인 금지로 해석되지 않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셋째, 제정안에서는 장애인의 개별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엄권, 평등권, 자기결정권, 참정권, 교육권 등 각종 권리를 조항별로 명시하고, 이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구체화하고 있으나, 이러한 권리는 이미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있어 하위 규범인 법률에서 다시 특정하여 규정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논의가 필요하며, 일부 추상적 개념의 권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 정립 및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임.

넷째, 제정안에서는 누구든지 장애서비스를 신청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각각의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서비스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되고, 현재 장애인등록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므로, 지속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충분한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5.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6.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수진)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7.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8.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